
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
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 우편번호 : 30103
- 전자우편 : nasarang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5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(전화 044-201-3588, 팩스 044-201-55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6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6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한국수안 (이동섭)
 ② 동양콘크리트산업(주) (신상훈)
 ③ (주)홍익기술단 (성낙전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269-0306 ② 02-597-2950 ③ 043-230-7801

2. 명칭 : 비점오염처리 및 우수유출저감 기능을 가진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우수처리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도로 / 기타 도로 시설, 토목 / 수자원 /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

<기술의 요지>

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우수를 집수하는 빗물받이, 초기우수를 1차 처리하는 필터 및 스크린이 설치된 처리시설을 걸쳐 시설 하단부 저류조에 유입되어 저류조 외측에 설치된 필터 및 잡석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우수를 고효율로 처리하여 깨끗한 지하수의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유입에 따른 지하공

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호우시엔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으로 도심 및 도로의 침수방지가 가능한 기술로, 저류조 일체형 및 현장조립식으로 설치규모를 축소해 공기 단축 및 시공성을 확보 할 수 있고 간단한 필터부 분리, 흡입세정기 청소방식으로 유지관리 소요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술

<범위>

빗물받이 내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, 유훈된 우수를 여과하는 우수유입구를 통해 비점오염을 처리하고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적정량의 정화수를 일시저류 후 침투하는 우수처리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‘나’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65호

관보 제19776호(2020. 6. 19.)에 게재된 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833호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)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년 6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라. 검사수수료 현실화(안 별 표 23) 1) 검사수수료 30% 인상 (정기검사 기준 55,000원 →71,500원)	라. 검사수수료 현실화(안 별 표 23) 1) 검사수수료 50% 인상 (정기검사 기준 55,000원 →82,500원)	관보 제19776호(2020. 6. 19) 72쪽, 위에서 21번째 행

●병무청공고제2020-68호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(법률 제16768호 2020. 4. 1.)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2020년 6월 24일

병 무 청 장